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15일, 서영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1.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7.)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8.)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2.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영교의원)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각각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기숙사로 사용되는 학교등의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대학생의 기숙사비 인상 및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대학생 주거 여건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학교등의 기숙사로 사용·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대학생 주거 여건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 기숙사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개정안 제42조제1항)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이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과세기준일 현재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주민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감면의 적용대상은 사학진흥기금을 투입¹⁾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²⁾으로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임. 사립학교 등은 사학진흥기금으로부터 용자를 받아 기숙사를 건립하고, 용자를 모두 상환할 때 기숙사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현

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기금의 사용)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改修)·보수(補修)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 3. (생략)

4. 제1호에 따른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4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의2(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설립·운영되는 기숙사를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기숙사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준공 후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는 방식

2. 준공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며,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준공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며,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용자를 모두 상환할 때까지 적용됨.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사립대학 내에 사학진흥기금 등으로 기숙사를 건립하는 유형을 “행복기숙사(사립)”과 국립대 부지 등에 사학기금을 재원으로 건립한 “행복기숙사(연합)”가 있음.

행복기숙사(사립)은 40개교에 52개의 사업(수용인원 23,043명)이 있고, 이 중 6개 사업은 사학진흥기금의 용자를 모두 상환했음. 행복기숙사(연합)은 9개 사업(수업인원 7,988명)이 있음.

개정안을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복기숙사(사립) 및 행복기숙사(연합) 사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 기한이 연장됨으로써 진행중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서영교(IX)의원안에 따라 학교 등 기숙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79.4억원(연평균 26.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